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공고 2019-8호

공시송달 공고

아래 송달내역은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등기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거나 거주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형사소송법 제477조 제1항, 제3항,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11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 2. 21.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검사 김정현



공시송달 내역

1. 제목 : 벌과금 체납에 따른 벌과금 납부독촉서 공시
2. 공고기간 : 2019. 2. 18. ~ 2019. 3. 6.(14일간)
3. 송달내역

연번	징제번호	종류	납부 의무자	주민등록 번호	미납액 (단위 : 원)	사유
1	2019-259	추징	지성후	720621-*	200,000	수취인부재
2	2019-260	벌금	남두규	730725-*	600,000	수취인부재
3	2019-261	벌금	박장원	861202-*	5,000,000	수취인부재
4	2019-268	벌금	정병수	771030-*	4,000,000	수취인부재
5	2019-269	벌금	박월여	661211-*	300,000	수취인부재

4. 문의사항 :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재산형집행계(054-820-4584)

5. 기타사항

벌과금 체납에 따른 벌과금 납부독촉서는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위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벌과금 납부독촉서의 납부기한은 벌과금 납부독촉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 날부터 15일까지입니다.

벌과금 납부독촉서의 납부기한 내 벌과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귀하의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 및 체납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과료) 미납자인 경우 벌과금 납부독촉서의 납부기한과 상관없이 지정수배되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